|  |  |  |
| --- | --- | --- |
| **설비•기구 공제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2018]54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 :  기업의 설비•기구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신규 구입한 설비•기구로 그 단위가치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과세소득 계산 시 당기 원가비용으로 일회적으로 계상하여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 단위가치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해서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 기업소득세 정책 보완에 관한 통지>(재세[2014]75호),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고정자산 감속감가상각 기업소득세 정책의 진일보 보완에 관한 통지>(재세[2015]106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 이 통지에서 설비•기구라 함은 건물•건축물 이외의 고정자산을 지칭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18년 5월 7일 |  | **关于设备、器具扣除有关企业所得税**  **政策的通知**  财税〔2018〕54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局：  　　为引导企业加大设备、器具投资力度，现就有关企业所得税政策通知如下：  　　一、企业在2018年1月1日至2020年12月31日期间新购进的设备、器具，单位价值不超过500万元的，允许一次性计入当期成本费用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扣除，不再分年度计算折旧；单位价值超过500万元的，仍按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完善固定资产加速折旧企业所得税政策的通知》（财税〔2014〕75号）、《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进一步完善固定资产加速折旧企业所得税政策的通知》（财税〔2015〕106号）等相关规定执行。  　　二、本通知所称设备、器具，是指除房屋、建筑物以外的固定资产。  财政部  税务总局  2018年5月7日 |